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473 제출년월일 : 2022. 3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(구)대관령상행휴게소의 주차장 이용료에 대하여,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이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문의체계를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용료의 감경 대상을 정함(현행 제4조제2항을 안 제4조제1항으로 함)

나. 이용료의 면제 대상을 정함(현행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안 제4조제2 항으로 정비함)

다.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(안 제4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1) 입법예고(2022.1.14. ~ 2022.2.3.) 결과, 의견제출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조(이용료 감면) ①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
 - 1. 승용자동차이거나 경형·소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
 - 2. 대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차인원 중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.
 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
- 2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 차
- 3.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
- ③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- 1.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협의가 있는 경우
- 2. 관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
- 3.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여행주간이 나 명절연휴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
- 4. 그 밖에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혀 행

- 제4조(이용료 감면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과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용료를 전액 면제한다.
 - ②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 록된 장애인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이용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
 - 1. 승용자동차이거나 경형·소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직접 운전하거 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에 동승한 경우
 - 2. 대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차인원 중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

개 정 안

- 제4조(이용료 감면) ① 「장애인복 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 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 가유공자가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 을 감경한다.
 - 1. 승용자동차이거나 경형·소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직접 운전하거 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에 동승한 경우
 - 2. 대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차인원 중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 한다.
 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 무를 수행하는 차량
 - 2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

③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한다.

- 3.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이 용하는 경우
 - ③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- 1.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이나 협의가 있는 경우
 - 2. 관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에

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

 경우
 - 3.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여행주간이나 명절연휴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
 - 4. 그 밖에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관계법령 발췌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(약칭: 공유재산법 시행령)

제14조(사용료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
강원도 사무위임 조례

제2조(위임사항) ① 강원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.

■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[별표 1]

시장 ·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(제2조제1항 관련)

		10 01 11 11 11 11 11 11 11 11	,
업무분야	일련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문화관광 체육	7	(구)대관령상행휴게소 소재 행정재산에 관한 다음의 시무	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4조
		가. 사용수익허가	같은 법 제20조
		나.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청문	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
		다. 관리위탁 및 위탁료 징수	같은 법 제27조
세막		라. 사용료 징수	같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
		마. 연체료 징수	같은 법 제80조
		바. 변상금 징수	같은 법 제81조

(강원도·평창군) (구)대관령상행휴게소 관리·운영 사무위임에 따른 협약서 (2018.1.2.)

제2조(위임재산 등) 위임재산의 명세는 별도 작성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위임사무) 본 협약에 따른 위임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제2조에 따른 위임재산의 유지·관리·운영
- 2. 이용객의 편의도모 및 안전관리
- 3. 그 밖에 휴게소의 보호·관리에 필요한 사항

■ 사무위임 재산목록

 ① 건축물
 ※ 건축물대장 기준

소재지	구분	구분 층별 구조 용도		용도	면적(m²)
			1,837.697		
	주0	1층	철근콘크리트조/아스팔트싱글	소매점,휴게음식점,일반음식점	617.250
	주0	1층	철골조/썬라이트	캐노피	84.220
	주0	1층	철골조/썬라이트	캐노피	99.520
대관령면 횡계리 14-111, 14-304	주0	1층	경랑철골조/아스팔트싱글	휴게실	28.970
	주0	1층	철골조/썬라이트	캐노피	99.850
	주0	지1	철근콘크리트조	기계실,창고	289.847
	부1	1층	철근콘크리트조/아스팔트	직원숙소	312.120
	부1	지1	철근콘크리트조/아스팔트싱글	창고	39.600
	부2	1층	경량철골조/경량판넬	직원숙소	99.390
	부3	1층	철근콘크리트조/슬라브	매점	36.000
대관령면 횡계리	주1	1	철근콘크리트조/슬라브	일반음식점	45.930
672-1, 14-304	주1	1	철근콘크리트조/슬라브	일반음식점	85.000

2 **토지**

소재지	면적(m²)	비고(사용승인사항)
대관령면 횡계리 14-293(잡) *휴게소 주차장부지	5,890	-사용자: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-목 적: 올림픽 개폐회식 참가자 수송을 위한 주차공간 사용 -기 간: '18.2.8(목)~2.26(월), '18.3.8(목)~3.19(월) -조 건 ·시설물 설치 등 원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추진 ·사용승인기간 중 발생한 인·물적 사고는 조직위 책임 조치 ·승인기간 완료 후 원상 반환 조치(파손 시 복구비용은 조직위 부담)

주차장법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주차장"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.
 - 가. 노상주차장(路上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(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(一般)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 - 나. 노외주차장(路外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 - 다. 부설주차장: 제19조에 따라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(附帶)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・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-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(이하 이들을 합하여 "노상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- **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**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"노외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- **제19조의3(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)**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 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
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「주차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 2항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"공영주차장"이라 한다)의 주차 요금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민간노외주차장(이하 "민영주차장"이라 한다), 「자연공원법」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·도·군립공원의 주차장,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사업체의 주차장,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라

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.

- ②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.
- 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고, 해당 장애인이 탑승(자가운전이나 대리운전하 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.
- 1의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해당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.
- 2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,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다.
- 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.

제8조(노상·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) ① 노상·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수 있다.

- 1.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
- 2.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
- 3.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

제13조의2(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)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제16조(관리비)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제2조(자동차의 종별 구분)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 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.
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]

자동차의 종류(제2조관련)

1. 규모별 세부기준

	, , , _				
종류	경형 일반형		소형	중형	대형
승용 자동차	배기량이 250시시(전기자동 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) 이하이고, 길이 3.6미터 · 너비 1.5미터 · 높 이 2.0미터 이하인 것	배기량이 1,000시 시 미만이고, 길이 3.6미터 · 너비 1.6 미터 · 높이 2.0미 터 이하인 것	배기량이 1,600시시 미만이고, 길이 4.7 미터ㆍ너비 1.7미 터ㆍ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	배기량이 1,600시시 이상 2,000시시 미만이거나, 길 이 · 너비 · 높이 중 어느 하 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	배기량이 2,000시시 이 상이거나, 길이 · 너비 ·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
승합 자동차	배기량이 1,000시시 미만이그 너비 1.6미터 · 높이 2.0미터	고, 길이 3.6미터· 이하인 것	승차정원이 15인 이 하이고, 길이 4.7미 터 너비 1.7미터 · 높이 2.0미터 이하 인 것	비·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, 길이가 9	이거나, 길이·너비·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, 길이가 9미터 이상
화물 자동차	차의 경우 최고정격줄력이 15킬로와트) 이하이고, 길이	시 미만이고, 길이 3.6미터·너비 1.6	최대적재량이 1톤	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, 총중량이 3.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	전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이거나,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

특수 배기량이 1,000시시 미만이고, 길이 3.6미터·	총중량이 3.5톤 이	총중량이 3.5톤 초과 10톤	총중량이 10톤 이상인
자동차 너비1.6미터·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	하인 것	미만인 것	것
배기량이 50시시 미만(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륜 이하)인 것 자동차	. 배기량이 100시시 이하(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)인 것	260시시 이하(최고정격출력	배기량이 260시시(최고 정격출력 15킬로와트) 를 초과하는 것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(약칭: 친환경자동차법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2. "환경친화적 자동차"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.
 - 가.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 - 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
 - 다.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- 3. "전기자동차"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(動力源)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- 4. "태양광자동차"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- 5. "하이브리드자동차"란 휘발유·경유·액화석유가스·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(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)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- 6. "수소전기자동차"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 차를 말한다.
- 7.~8. 삭제 <2016. 12. 2.>

도로교통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22. "긴급자동차"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 차를 말한다.
 - 가. 소방차
 - 나. 구급차
 - 다. 혈액 공급차량
 - 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

도로교통법 시행령

제2조(긴급자동차의 종류) ①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2호라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"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 다만,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·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- 1.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, 교통단속,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
- 2.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(誘導)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
- 3.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
-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,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・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
 - 가. 교도소・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
 - 나.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
 - 다. 보호관찰소
- 5. 국내외 요인(要人)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(公務)로 사용되는 자동차
- 6. 전기사업, 가스사업,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
- 7.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
- 8.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 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
- 9. 전신 ·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
- 10.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
- 11.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 차로 본다.
- 1.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
- 2.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 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
- 3.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

장애인복지법

- 제32조(장애인 등록) ① 장애인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(이하 "법정 대리인등"이라 한다)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(이하 "등록증"이라 한다)을 내주어야 한다.
- 제39조(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)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수 있는 표지(이하 "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"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 국가유공자법)

- **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 - 1. 순국선열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

- 2. 애국지사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
- 3. 전몰군경(戰歿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4. 전상군경(戰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(퇴역・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퇴직 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)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- 5. 순직군경(殉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6. 공상군경(公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- 7. 무공수훈자(武功受勳者): 무공훈장(武功勳章)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- 8. 보국수훈자(保國受勳者)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
 - 나.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,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(이하 "간첩체포등의 사유"라 한다)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- 9.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(在日學徒義勇軍人)(이하 "재일학도의용군인"이라 한다):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(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)
- - 가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 - 나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- 11. 4·19혁명사망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
- 12. 4·19혁명부상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- 13. 4・19혁명공로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(建國褒章)을 받은 사람

- 14. 순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15. 공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- 16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(이하 "특별공로순직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 상자로 의결된 사람
- 17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(이하 "특별공로상이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- 18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(이하 "특별공로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 상자로 의결된 사람
- **제6조(등록 및 결정)** ①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신청 대상자"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,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- **제66조(수송시설의 이용지원)**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・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(輸送施設)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 - 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
 - 2.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 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○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
연락처	(033) 330 - 2542